

체육부 규정

(제정 1992. 9.15.)

(전부개정 2015.11.24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체육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체육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체육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
2. 각종 경기대회 출전 및 관리
3. 특기자 수급·육성관리
4. 선수 포상 및 징계
5. 체육부 생활관 관리 및 운영
6.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
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2장 조직

제3조(부장) ① 체육부에 부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1.1.>

②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인력) 체육부에 종목별 감독 및 코치, 조교, 그 밖의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5조(위원회) 체육부에 운영위원회와 지도위원회를 둔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 체육의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
2. 종목별 운동부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체육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위원은 학생취업처장, 입학처장, 기획처장, 총무처장, 문화융합대학장, 체육부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체육계열 교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29.>

③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학생지원실장을 간사로, 체육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.

제7조(지도위원회) ①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특기자 훈련 계획 및 운영
2. 특기자 평가 및 상벌
3. 그 밖에 특기자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위원은 체육부장, 학생지원실장, 종목별 감독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체육부장이 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학생지원실장을 위원 겸 간사로, 체육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.

제4장 선수 선발

제8조(선수 선발) ① 종목별 선수 정원은 축구부 28명, 씨름부 16명, 레슬링부 16명으로 하며, 기타 종목의 선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선수 선발은 본교 입학전형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.

③ 학비면제 등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대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선수 준수사항) ① 모든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 의무를 다하며, 훈련 및 학과 수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2. 훈련 및 출전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.
3. 총장의 허가 없이 선수 임의로 운동을 거부하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.
4. 선수는 생활관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선수 중에서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재학 중에 휴학할 수 없다.
2. 취업 시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3. 부상 등의 사유로 운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빙서류 및 감독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학생으로 재학할 수 있다.

③ 선수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도위원회의 징계 제청으로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5장 운영 및 관리

제10조(생활관) ① 선수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생활관은 “영광의 집” 이라 한다.

② “영광의 집” 입소는 본교 재학생으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며, 그 대상자와 기간은 체육부장이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부 운동부의 입소를 허락할 수 있되, 입소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본교 특기자로 입학예정인 자가 속한 고등학교 운동부
2. 본교 체육부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운동부

제11조(대회참가) ①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회참가신청서 및 전지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대회종료 10일 이내에 대진표 및 정산서를 포함하는 대회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각 종목별 감독 및 코치는 전국대회 이상에서 목표성적에 입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성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제12조(성적포상) ① 성적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금 면제, 생활관 입소 및 생활관비 면제의 혜택을 줄 수 있다.

② 전국대회 이상에서 축구는 3위 이내, 그 밖의 단체종목은 2위 이내에 입상한 경우 감독 및 코치를 포상할 수 있다.

③ 국제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한 단체 및 개인에게는 총장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선수진료) ① 공상은 대회참가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.

② 공상에 따른 치료비는 1회에 한정하여 본교에서 부담한다. 다만, 본교 지정병원에서 치료하여야 하며,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제3조 제4항 1호 단체종목 총 선수는 1995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규정은 199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